●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 (의안번호: 2697)

2025. 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697

I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25. 5. 26.

다. 회 부 일 : 2025. 5. 29.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53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900만원(0.2%)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민간기업의 기부금 지정기탁에 따라 9억 5000만원이 증가(0.4%)하였으며, 국비 집행잔액 반환 및 사용잔액에 의한 수입으로 9억 8300만원(0.4%) 등이 증가하였음.

〈표〉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백만원,%)

_	구분	2024 레시	2025	년도	スル(ロ) (2)
	T 正	2024예산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비율)
합	계	225,371	253,726	253,127	599(0.2)
세외	경상적	40,991	253,726	38,060	13(0.0)
	임시적	29,375	38,073	32,207	1,002(3.1)
수입	행정제재부과금	5	33,209	5	-
지방	교부세	-	5	-	-
국고5	[!] 조금 등	150,613	_	178,840	△1,400(△0.8)
 지방채		_	177,440	-	-
보전수입 등 및		0.070		0.470	002(20.7)
	부거래	2,872		2,478	983(39.7)

나.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771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8억 7600만원(8.6%)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백만원)

7.H	2024예산	2025	スプ(ロ) (2.)	
구분	2024예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비율)
합 계	711,583	771,162	710,286	60,876(8.6)
행정운영경비	10,108	10,777	10,814	$\triangle 37(\triangle 0.3)$
재무활동	17,656	6,995	1,683	5,312(315.6)
사업비	683,819	753,390	697,789	55,601(8.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특별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 가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정', '도시 안전', '미래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핀셋투자 편 성¹)이라고 밝힘.
- 2025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6146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48조 1545억원 대비 3.4%가 증가함.

	[2025 213	선물시 제1회 추경예산안 중점	무사 문사]
	분 야	주요 내용	추경안
	10 T AN 10 A 20 A	1-1, 소상공인 지원	287억원
	1. 민생안정	1-2, 중소기업 수출지원	242억원
4	(4,698억원	a) 1-3, 취약계층 지원	2,986억원
он	3.,,,,,	1-4, 저출생 대책 강화	1,183억원
업예	2. 도시안전		1,462억원
	(1,587억원	g) 2-2. 안전인프라 보수·보강	125억원
산	3. 미래투지	3-1. AI 산업 기반 조성	354억원
	(1,335억원	4) 3-2. 글로벌 매력 제고	981억원

-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102억 8600만원 대비 608억 7600만원 증액한 771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이번 추경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① 손목닥 터 9988 참여자 확대, ② 저출생 대응, ③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¹⁾자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25. 5. 26., **"서울시, 올해 첫 추경… 민생·안전·미래산업 '핀셋투자'로 위기 극복"**, 서울시 보도자료.

- 시립병원 긴급지원 등 시정 현안 추진을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번 추경안에 증액사업은 31건 664억 3100만원, 감액사업은 18건 △55억 5500만원임.

2 세입 및 세출 총괄

1) 세입예산 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53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민간기업의 기부금 지정기탁에 따라 9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집행잔액 반환 및 사용잔액에 의한 수입으로 9억 8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음.

〈표〉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백만원,%)

	7.日	٥٥٥٨ما) کا	2025	년도	スプレ(ロ) (0.)
구분		2024예산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비율)
합	계	225,371	253,726	253,127	599(0.2)
세외	경상적	40,991	253,726	38,060	13(0.0)
	임시적	29,375	38,073	32,207	1,002(3.1)
수입	행정제재부과금	5	33,209	5	_
지빙	교부세	_	5	_	_
국고보조금 등		150,613	_	178,840	△1,400(△0.8)
지방채		_	177,440	_	_
보전수입 등 및		0.070		0.470	000(00.7)
내	부거래	2,872	_	2,478	983(39.7)

2) 세출

가) 세출예산 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771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8억 7600만원(8.6%)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예산	2025	증감(비율)	
		2024에/간	추경예산	기정예산	· 중심(미월)
	합 계	711,583	771,162	710,286	60,876(8.6)
	행정운영경비	10,108	10,777	10,814	$\triangle 37(\triangle 0.3)$
	재무활동	17,656	6,995	1,683	5,312(315.6)
	사업비	683,819	753,390	697,789	55,601(8.0)

나) 부서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건강과 1건(313억 1600만원), 공공의료과 6건(107억 8200만원), 감염병관리과 9건(105억 9200만원), 건강관리과 7건(68억 1000만원), 보건의료정책과 4건(6억 1500만원), 정신건강과 8건 (8500만원) 순으로 추경금액이 높았으며, 식품정책과는 4건(△3억 9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그 외 사업소별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북병원 4건(7억 5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4건(2억 1600만원), 어린이병원 1건(1억 100만원) 순으로 추경금액이 높았음.

〈표〉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710,286	60,876	771,162	8.6%	49
보건의료정책과	42,642	615	43,256	1.4%	5
스마트건강과	33,222	31,316	64,538	94.3%	1
건강관리과	154,522	6,810	161,332	4.4%	7
정신건강과	130,858	85	130,942	0.1%	8
감염병관리과	156,462	10,592	167,054	6.8%	9
식품정책과	25,692	△392	25,299	△1.5%	4
공공의료과	98,402	10,782	109,184	11.0%	6
보건환경연구원	19,898	216	20,117	1.1%	4
어린이병원	10,606	101	10,708	1.0%	1
서북병원	17,210	752	17,962	4.4%	4

다) 편성목적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을 기정예산 대비 608억 7600만원(8.6%) 증액편성하여 7711억 6200만원으로 제출하였는데,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손목닥터 9988 참여자 확대 인센티브 지원 등(313억원), ② 저출생 대응 출산전후 건강관리 지원(55억원), ③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시립병원 경영회복자금 지원(99억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됨.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저출생 대응 출산 전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55.4
손목닥터, 저출생, 병원지원 등 주요현안 추진 (468억원)	손목닥터 9988 누적 참여자수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13.2
	시립병원 경영회복자금 지원	99.6
계획변경 등에 따른 감액편성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대상자 축소 및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전문이송팀 인력채용 지원으로 인한 감액	△9.1
(△12억)	기타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감액	△2.5
국비사업 확정(변경)내시 반영 (81억)	국고 보조사업 교부액 변경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반영	81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5
그 외 사업추진 등 (71억원)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53.1
	기타	12.6

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49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증액사업은 총 31건(664억 3100만원), 감액사업은 총 18건 △55억 55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x180,885)	(x△1,400)	(x179,485)	
	동세	710,286	60,876	771,162	
	보건의료정책과	(×13,243)	(×△31)	(×13,212)	
	포신기표·8/취기	42,642	615	43,256	
1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230	25	254	• 부서 격무수당 지급 결정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편성
2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체계 구축	4,798	△399	4,400	• 전문이송팀 인력채용 지연에 따른 6개월분 인건비 감액
3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x29)	(x35)	(x64)	• (국비내시) 의료기관
	설치지원	43	53	95	스프링클러설치지원 내시반영
4	응급의료기관 지원	(x6,795)	(x△66)	(x6,729)	•(국비내시) 응급의료기관 등
	6 바이죠기인 기년	7,599	△30	7,569	지원 관련 내시반영
5	국고보조금 반환	-	966	966	•국고보조금 반환(8개 사업)
	스마트건강과	(×-)	(x-)	(×-)	
	스마트건강과	33,222	31,316	64,538	
6	서울형 헬스케어(손목 닥터 9988) 운영	30,374	31,316	61,691	• 사업 참여자 수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확대 편성
	키키키키키	(×27,642)	(×308)	(×27,950)	
	건강관리과	154,522	6,810	161,332	
7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	500	500	•기부금 세입처리에 따른 비만예방, 만성질환사업 지원
8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27,806	5,536	33,341	• 사업 참여자수 확대에 따른 지원예산 부족분 반영
	임신 사전건강관리	(x1,394)	(x395)	(x1,789)	• (국비내시) 가임력 검사 관련
9	지원(가임력 검사)	3,520	856	4,375	내시반영
10	계세 크기 기기기기	(x345)	(x112)	(x457)	•(국비내시) 생애초기
10	생애 초기 건강관리	607	168	774	건강관리 사업 내시반영
11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	(x11)	(x1)	(x11)	• (국비내시) 지역보건소 우수
	사업발굴 및 보급지원	11	1	12	보건사업 지원 관련 내시반영
12	의료수급권자	(x902	(x△200)	(x702)	• (국비내시) 의료수급권자 일반
12	일반건강검진 지원	1,352	△300	1,052	건강검진 지원 관련 감액내시
13	국고보조금 반환	277	50	327	•국고보조금 반환(4개 사업)
	저 시 기 기 기	(×41,271)	(×△1,045)	(×40,226)	
	정신건강과	130,858	85	130,942	
14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1,300	△100	1,200	• 공모일정('25.5.)에 따른 자치구 교부액 감추경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1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x263)	(x126)	(x389)	• (국비내시) 중독관리 통합
	운영	395	189	583	지원센터 관련 내시반영
16	정신요양시설	(x4,185)	(x344)	(x4,529)	●(국비내시) 정신요양시설 운영
	운영보조(국비)	8,816	688	9,504	관련 내시반영
17	통합정신건강증진	(x3,337)	(x99)	(x3,436)	• (국비내시) 통합정신건강증진
	0 0 0 0 0 0	4,910	198	5,108	사업 관련 내시반영
18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_	(x62)	(x62)	• 청년층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124	124	지원사업(신규) 국비내시
19	정신건강증진시설	(x3,220)	(x△38)	(x3,181)	• (국비내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5,431	△68	5,363	인력 관련 감액내시
2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x10,130)	(x△1,638)	(x8,492)	• (국비내시) 마음투자
	212 /11 / /2	15,225	△2,448	12,777	지원사업 관련 감액내시 반영
21	국고보조금 반환	-	1,502	1,502	•국고보조금 반환(18개 사업)
	감염병관리과	(×74,674)	(×△487)	(×74,187)	
	심검병선디다	156,462	10,592	167,054	
2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대응 인력지원	120	△60	60	●채용인력 감소(2→1인)에 따른 감추경
2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	5,652	△507	5,145	•지원대상자 범위 축소에 따른 감추경
	7	(x89)	(x2)	(x91)	•(국비내시) 주요 감염병
24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178	4	182	표본감시 사업 내시반영
0.5	코로나19 백신접종	(x23,420)	(_X -)	(x23,420)	• '25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25	실시	40,743	10,000	50,743	사업 시비 미반영분 편성
0.0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x36,026)	(x△337)	(x35,689)	• (국비내시) 국가예방접종
26	-국가예방접종 실시	78,056	△731	77,325	사업 관련 감액내시
0.7	결핵 관리-보건소	(x2,949)	(x△19)	(x2,929)	• (국비내시) 보건소 결핵관리
27	결핵관리(국비)	5,032	△32	4,999	사업 감액내시
28	결핵 관리-의료기관	(x2,989)	(x△105)	(x2,883)	•(국비내시) 의료기관 결핵환자
	결핵환자 관리지원	2,989	△105	2,883	관리지원사업 감액내시
2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x521)	(x△27)	(x494)	●(국비내시)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521	△27	494	시설장비유지비 관련 감액내시
30	국고보조금 반환	-	2,051	2,051	•국고보조금 반환(25개 사업)
	기 교 기 비의	(×9,966)	(×△255)	(×9,711)	
	식품정책과	25,692	△392	25,299	
31	농수산물 수거 검사 (자체)	1,722	△50	1,672	• 재료비 비중 변동에 따른 예산 감추경
3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1,468	△15	1,453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매칭 구비 미확보액 반영 감추경
	노기프 네이커 네이	(x3,099)	(x△255)	(x2,844)	• (국비내시) 농식품 바우처
33	농식품 바우처 지원	6,714	△553	6,161	지원사업 감액내시
		*		•	

공공의료과 (×12.577) (×28) (×12.605) 109.184 35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7.350 4.874 12.224 이시립병원 현급 유 위학운영 7.350 4.874 12.224 이시립병원 현급 유 위학 긴급 36 위학운영 8.956 5.090 14.046 이시립병원 현급 유 위학 긴급 37 원 720 720 720 48의료원 경영형 기업 10년 10년 10년 10.606 101 10.708 보건환경우 보건조금 반환 - 770 90 - 국고보조금 반환(41 청사시설 유지관리 1.465 18 1.483 - (국비내시) 과접 관련 내기 중합면 시원 관련 시원 관련 시원(국비, 경상) 214 4 구고보조금 반환 - 770 (국민내시) 대기 축령 기관 연구 관련 내시 10.600 10.600 10.10 10.708 4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조)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10,182 10,184 10,182 10,184 35 42독별시 동부병원 7,350 4,874 12,224 4시립병원 현급 유해소를 위한 진급	34	국고보조금 반환	-	226	226	• 국고보조금 반환(10개 사업)
98,402 10,782 109,184 35 109,184 35 109,184 36 10,785 36 10,785 37 38 39 39 39 39 39 30 37 37 37 38 38 39 39 39 39 39 39	고고이크게		(×12,577)	(×28)	(×12,605)	
35 위탁운영		유유의 <u></u>	98,402	10,782	109,184	
35 위탁운영 8,956 5,090 14,046 해소를 위한 긴급 37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	35		7,350	4,874	12,224	•시립병원 현금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37 원 -	36		8,956	5,090	14,046	•시립병원 현금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18	37		-	720	720	• 서울의료원 경영혁신전략 평가 인센티브 매칭시비분
39 지원 (공립요양병원 BTL사업) 1,660 28 1,688 1,688 1,688 BTL사업 관련 내 40 국고보조금 반환 - 90 90 •국고보조금 반환(×1,455) 19,898 216 20,117 41 청사시설 유지관리 1,465 18 1,483 •공무직 근로자 퇴소급지급액 편성 1,405 등 사업 관련 내시 140 등 사업 관련 내시 4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x-) (x-) (x98) (x98) 4,088 (x98) (x98) (x98) 4,088 26여사업 관련 내시 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7 •국고보조금 반환(10,606 101 10,708 45 국고보조금 반환 - 101 101 •국고보조금 반환(17,210 752 17,962 46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 무서비스 제공 47 이력우역비 (x38) (x△8) (x△18) (x△18) (x19) •(국비내시) 당립보	38		20	△20	-	• 사업 중복에 따른 감추경
기원(공업요양병원 BTL/사업) 1,660 28 1,688 BTL/사업 관련 내 40 국고보조금 반환 - 90 90 • 국고보조금 반환((x1,660)	(x28)	(x1,688)	•(국비내시) 공립요양병원
40 국고보조금 반환 - 90 90 •국고보조금 반환(보건환경연구원 (×1,455) 19,898 216 20,117 41 청사시설 유지관리 1,465 18 1,483 •공무직 근로자 되소급지급액 편성 42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107) (×△37) (×70) •(국비내시) 가축병 지원(국비, 경상) 214 △74 140 등 사업 관련 내시 4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 (×98) (×98) (×98) •(국비내시) 대기질 중앙사업 관련 내시 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7 •국고보조금 반환(어린이병원 (×-) (×-) (×-) (×-) (×-) (×-) (×-) (×-)	39		1,660	28	1,688	BTL사업 관련 내시반영
보건환경연구원 19,898 216 20,117 1,465 18 1,483 • 공무직 근로자 퇴소급지급액 편성 1,465 18 1,483 • 공무직 근로자 퇴소급지급액 편성 1,465 140 • (국비내시) 가축병 등 지원(국비, 경상) 214 △74 140 등 사업 관련 내시 등 사업 관련 내시 등 사업 관련 내시 등 사업 관련 내시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3,893 195 4,088 운영사업 관련 내시 국고보조금 반환 ← 77 77 • 국고보조금 반환 (40		-	90	90	•국고보조금 반환(5개 사업)
19,898 216 20,117 41 청사시설 유지관리 1,465 18 1,483 ●공무직 근로자 퇴소급지급액 편성 42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x107) (x△37) (x70) ●(국비내시) 가축병 등 사업 관련 내시 4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x-) (x98) (x98) ●(국비내시) 대기질 운영사업 관련 내시 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 77 ●국고보조금 반환(어린이병원 (x-) (x-) (x-) (x-) (x-) (x-) (x-) (x-)		나 기선 자시 그 이	(×1,455)	(×61)	(×1,516)	
41 청사시설 유시판리 1,465 18 1,483 소급지급액 편성 42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x107) (x△37) (x70) ● (국비내시) 가축병 등 사원(국비, 경상) 214 △74 140 등 사업 관련 내시 4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x-) (x98) (x98) ● (국비내시) 대기질 운영사업 관련 내시 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7 ○국고보조금 반환(45 국고보조금 반환 - 101 10,708 45 국고보조금 반환 - 101 10,708 46 사북병원 고객중심 약 무서비스 제공 1,304 498 1,802 ● 결핵치료제 및 호관련 의약품 구입 47 이력우역비 (x38) (x△18) (x△18) (x19) ● (국비내시) 보건복		모선완경연구원	19,898	216	20,117	
42 지원(국비, 경상) 214 △74 140 등 사업 관련 내시 4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x-) (x98) (x98) (x98) (-국비내시) 대기질 중합분석 운영 3,893 195 4,088 운영사업 관련 내시 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7 주가 주고보조금 반환(41	청사시설 유지관리	1,465	18	1,483	•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및 소급지급액 편성
지원(국비, 경상) 214 △74 140 등 사업 관련 내시 4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3,893 195 4,088 (x98) 4,088 운영사업 관련 내시 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 7 • 국고보조금 반환(어린이병원 10,606 101 10,708 45 국고보조금 반환 - 101 101 • 국고보조금 반환(서북병원 고객중심 약 무서비스 제공 1,304 498 1,802 환련 의약품 구입 47 이력우영비 (x38) (x△18) (x△18) (x19) • (국비내시) 보건복	49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x107)	(x△37)	(x70)	• (국비내시) 가축방역-예방약품
4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3,893 195 4,088 운영사업 관련 내 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7 77 • 국고보조금 반환(42	지원(국비, 경상)	214	△74	140	등 사업 관련 내시반영
3,893 195 4,088 운영사업 관련 내 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7 • 국고보조금 반환(어린이병원 10,606 101 10,708 45 국고보조금 반환 - 101 101 • 국고보조금 반환(서북병원 (×57) (×22) (×79) 17,962 46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 1,304 498 1,802 • 결핵치료제 및 호 관련 의약품 구입 47 이력우영비 (x38) (x△18) (x19) • (국비내시) 보건복	43	대기직 통합부석 우영				• (국비내시) 대기질 통합분석
어린이병원		-17 1 2 0 8 2 1 2 0	3,893	195	4,088	운영사업 관련 내시반영
어린이병원 10,606 101 10,708 45 국고보조금 반환 - 101 101 • 국고보조금 반환(44	국고보조금 반환	-	77	77	•국고보조금 반환(26개 사업)
10,606 101 10,708 45 국고보조금 반환 - 101 101 • 국고보조금 반환(어리이병원	(×-)	(×-)	(×-)	
서북병원 (×57) (×22) (×79) 17,962 17,962 46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 1,304 498 1,802 ●결핵치료제 및 호 관련 의약품 구입 (x38) (x△18) (x19) ●(국비내시) 보건복		112102	10,606	101	10,708	
지국병원 17,210 752 17,962 46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 1,304 498 1,802 ●결핵치료제 및 호 관련 의약품 구입 47 이력우영비 (x38) (x△18) (x19) ●(국비내시) 보건복	45	국고보조금 반환	-	101	101	•국고보조금 반환(1개 사업)
17,210 752 17,962 46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		서부벼워	(×57)	(×22)	(×79)	
46 무서비스 제공 1,304 498 1,802 관련 의약품 구입 47 이력우영비 (x38) (x△18) (x19) •(국비내시) 보건복		시작정된	17,210	752	17,962	
47 이런우혓비	46	,,,,,	1,304	498	1,802	• 결핵치료제 및 호스피스 병상 관련 의약품 구입비 편성
	47	이력우영비 -				• (국비내시) 보건복지부
75 △37 39 삼액내시 반영			75			
48	48		-			• (국비내시) 서북병원호스피스
	49		-			전문기관 운영관련 내시반영 • 국고보조금 반환(3개 사업)

3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사업 분석 〈사업별설명서 p.649〉

가. 현황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은 스마트 워치와 손목닥터 9988 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참여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임.

<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



이번 25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동 사업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 → 278만)에 따라,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여 308억 원을 기타보상금에 증액하는 등 총 313억원이 증액된 616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예	산(안)	총	괄			단위 : 천원)
2	7		반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중	감 (A-B)
		계			(x-) 61,690,542	30,374,143		(x-) 31,316,399
	사	무관	리비		(x-) 1,385,544	(x-) 1,365,544		(x-) 20,000
시	책추	진업.	무추지	(H)	(x-) 10,000	(x-) 10,000		(x-) 0
	71	타보	상금		(x-) 60,064,998	28,768,599		(x-) 31,296,399
10			대한 2 업비	-	(x-) 230,000	(x-) 230,000		(x-) 0
	과	목구	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손목닥터9988 서비스 확대	l 관련 홍보 및 자문비	= "	20,000천원
사	무	롼	리	비	2	중감사유		
					민간단체 기부금 지정기탁 용도 홍보 및 전문가 자문 확대	를 반영하여 전 시민의 신기	배활동 후	발성화를 위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59,634,998,000원(소요액)-	28,768,599,000원(기정예산) =	30,866,399천원
					○건강취약계층 신체활동 활성 참여자 모집 확대	성화 및 손목닥터9988	=	350,000천원
					-건강취약계층 신체활동 활 250,000,000원	·성화	=	250,000천원
7]	타	보	상	금	-손목닥터9988 참여자 모 100,000,000원	집 확대	=	100,000천원
					○건강콘텐츠 사업화지원금 80,000,000원		=	80,000천원
						증감사유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여 증가(60%→78%)에 따라 민간단체 기부금 지정기탁 - 손목닥터9988 참여자 모집 	인센티브 예산 중액 필요 용도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	충 신체	

나. 분석의견

첫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서울시가 추정한 신규가입자 수와 실제로 모집된 신규가입자의 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에 제출된 인센티브 예산액 308억 원에 대한 정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 서울시는 지난 24년 3월부터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① 연령 상한(75세) 폐지, ② 연중 상시 모집 전환, ③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함.
- 이처럼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손목닥터 9988'
 시스템을 개편하자 ① 당초 예상했던 2024년도 신규가입자 모집 목표인 25만 명보다 ②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신규 가입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제출 당시인 24년 5월 말 기준 52만명)을 했었음.

< 손목닥터9988 사업 24년도 월별 신규가입자 모집목표 및 실제 모집현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 계 (누적 계)
① 당초 예상		월명 무신 목표 없음							25만 명 (69.8만*)		
② 추경 당시	영 (06 0만 **) 여마까지						제1회 추경 8만명, 누적		만명 '예상 [']	함	108만 명 (153만)
④ 실제 모집	22만 (66.8만)	15.5만 (82.3만)	14.5만 (96.8만)	10.6만 (107.4만)	7.6만 (115만)	6.2만 (121.2만)	6.6만 (127.8만)	10.8만 (138.6만)	12.2만 (150.8만)	12.2만 (163만)	118.2만 명 (163만)

*69.8만명 = 23년 기존 가입자 44.8만명 + 24년 신규 가입자 모집목표 25만명 **96.8만명 = 23년 기존 가입자 44.8만명 + 24년 3월~5월 신규 가입자 52만명 그리고, 서울시는 ② 24년 연말까지 신규가입자의 수가 총 108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여, 지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초과된 신규참여자의 '인센티브 제공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13억 원을 편성하여제출한 바 있음.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A+B)	기정예산 (A)	증 감 (B)	추가경정예산 내역
	계	25,083,000	13,777,500	11,305,500	
200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000	1,000	0	• '24년 사업 목표 변경(신규참 여자 수 25만 → 60만)에 따라 상
서울형 헬스케어	사무관리비	1,618,000	1,618,000	0	시모집 체계로 전환 - 연내 사업 목표 초과 달성할 것
운영	기타보상금	23,184,000	11,878,500	11,305,500	으로 예측됨에 따라 ('24년 말 누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80,000	280,000	0	적 153만) 추가 신규참여자 인센 티브 제공 예산 필요

그런데 ③ 2024년도에 실제로 모집된 신규가입자의 수는 총 118.2만 명으로 지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제출 당시에 서울시가 추정한 108만 명보다 10만 명이 더 가입한 것으로 확인됨(앞 페이지 참조).

< 손목닥터9988 사업 25년도 월별 신규가입자 모집목표 및 실제 모집현황>

('25. 6. 4.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 계 (누적 계)
① 본예산 당시 예상	7.3만 (160.3만)	6.6만 (166.9만)	9.3만 (1762만)	9만 (1852만)	9.3만 (194.5만)	9만 (203.5만)	7.3만 (210.8만)	7.3만 (218.1만)	9만 (227.1만)	9.3만 (236.4만)	7만 (243.4만)	7.3만 (250.7만)	97만명 (250만 명)
② 실제 모집	13.3만 (176.3만)	11.4만 (187.7만)	15.3만 (203만)	7.1만 (210.1만)	7.3만 (217.4만)	연말까	25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연말까지 신규가입자 115만명, 누적 가입자 278만명 '예상'함				ᅨ상'함	115만명 (278만 명*)	

*278만명 = 23~24년 기존 가입자 163만명 + 25년 신규 가입자 모집목표 115만명

또한, 올해 서울시가 본예산안 편성 당시 추정한 신규가입자 수
 와 5월까지 실제로 모집된 신규가입자의 수 차이가 12만 명 이상(당초예상 41.5만명 → 실제모집 54.4만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안에 서울시가 산출근거로 제시한 ① '신규가입자 수 (115만명)'와 ② '누적가입자 수(278만명)' 추계 및 제출된 인 센티브 예산액 308억 원에 대한 정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둘째,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참여자가 매년 늘어날수록 투입되는 포인트 지급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구조임. 이에 현 단계에서는 동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되며, 아래와 같이 참여자가 늘어날수록('21년 5만명 → '25년 278만명) 투입되는 포인트 지급 예산('21년 15억원 → '25년 600억원(본예산+금번 추경))도 크게 증가하는 구조임.

< 손목닥터9988 사업 연차별 신규 모집인원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1차)	'22년(2차)	'23년(3차)	'24년(4차)	'25년(5차)	추경요청	합 계(누적)
		19~	64세	19~75세	19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도실	대상		※ 서울시	기민(서울 소	재 직장인 및	대학생 포함)		_
신규 모집 (누적)		5만명	18만명 (23만명)	22만명 (45만명)	118.2만 명 (163만)	* (당초 예상) 97만명 (250만 명)	*(현재 예상) 115만명 (278만 명)	115만명 (278만 명)
	최종예산 (본예산)	4,475 (-)	12,856 (3,522)	27,018 (27,018)	29,653 (18,197)	33,188 (33,188)	31,316	138,505
예산	(포인트)	1,500	1,000	14,000	23,184	28,769	3,1296	99,749
(시비	(워 치)	2,500	6,500	7,500	2,500	_	_	19,000
100%)	(시스템)	_	2,883	2,447	1,920	2,814		10,064
	(상담센터)	375	1,802	2,349	1,423	1,171		7,120
	(홍보 등)	100	670	721	626	435	20	2,572

- 현재 서울시는 동 사업의 모집 대상을 서울 시민은 아니나 서울 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와 대학의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연령 하향(기존 19세 이상 → 18세 이상)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서울시가 참여 연령을 하향하고 서울 시민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또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서울시의 재정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업 대상의 '확대'는 지금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²)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에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원)생'까지 상품권 등과 같은 혜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한 상황인데3)이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²⁾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회의록(2025년 4월 28일(월))

[○] 도문열 위원 이때까지 한 1,000억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도 한 400~500억씩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시민의 세금이 과연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배씩 들어가네요, 900억, 1,000억 매년.

[○] 시민건강국 최종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 도문열 위원 근데 제 말은 그렇게 투입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 도문열 위원 이게 그동안 보면 계속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하다가 올해부터 18세였어요. 갑자기 18 세로 내린 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 시민건강국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받은 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13세로 말씀드렸는데 **10세 이상 까지 받았습니다**, 정정드리는데요 10세 이상 받았고요. 다만 **중고생들이 전체적으로 폰을 보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 또 부모님들 우려**가 있어서 19세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선거연령도 한 살 낮아진 상태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보편적인 서비스를 많은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일단 한 살 정도 낮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 살 정도 낮추는 것으로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문열 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참여연령을 확** 대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 시민건강국 15세부터 보는, 청년은 15세부터……

[○] 도문열 위원 좋아요, 청소년은 9세부터 23세까지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이 18세로 내려오니까 같이 내려온 거는 아닙니까?**

[○] 시민건강국 꼭 그런 건 아닙니다.

³⁾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회의록(2025년 3월 5일(수))

[○] 이병도 위원 손목닥터9988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어쨌든 가입자가 많아 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또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예산의 대부분이 포인트 지급 예산이기 때문에 포인트 지급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커지는데, 한 가지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보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가 근거 조례가 되는 건가요?

[○] 시민건강국 네.

[○] 이병도 위원 손목닥터9988, 이 신체활동에 관련된 사업만 대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폭넓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플러스 우리 서울시 직장인까지. 이게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가 시민 플러스 서울시내 소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고 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결국 40억이라고 하는 정도, 가입자 추계로 보면 한 22만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아니고 다른 데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시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예산이 40억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례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 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정도 되는 건데 이것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딱 이 사업만.

[○] 이병도 위원 그리고 **조례를 봐도 어쨌든 서울시 직장인, 시민 플러스 서울시내 직장인이라고 조례에 딱 이것만 특별하게** 돼 있더라고요, 봤더니.

[○] 시민건강국 서울거주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 이병도 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 조례를 보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시민이 아니라 조례에 서울 소재 시민 플러스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없 는 대학생이나 자영업자까지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조례 체계랑도 맞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신동원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이병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사업대상이 19세 이상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대학생·자영업자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에 이것을 담지 않았나 또는 생활권자, 생활권자라 하면 시에 직장은 있는데 주소지가 서울에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 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시민건강국 일단 대학생이 빠져 있고요…….

[○]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직장의 종사자, 자영업자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이 알바를 할 경우, 서울** 시 안에서 알바를 할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대학생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 시민건강국 네.

[○]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근거에 둬야 되는데 왜 이렇게** 19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쳤을까요?

[○] 시민건강국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고려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 거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 신동원 위원 학생을 포함하시든지 아니면 학생을 빼든지 이런 거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뺀다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는 문제가 없고, 대학생을 넣는다고 그러면 조례에 그 부분이 없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 시민건강국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신동원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셋째, 현재 동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분석 용역'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동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음.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손목닥터 9988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⁴⁾⁵⁾.
-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한 이번 서울시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언론에서는 '손목닥터9988'이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이용자들에게 선심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 가 있었음⁶).
- 위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배포한 설명자료⁷⁾의 주 요내용을 살펴보면, "손목닥터9988 시행(2021년) 후 서울시민

⁴⁾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2년 11월 14일(월))

[○] 최기찬 위원 :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입중하려면 타당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 윤영희 위원 : 신체활동량 증가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에 여기 반박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미친 것에는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 비용편익에 대해서 시민과 시의회를 설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비용편익 부분에 대해서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사업 시행하시라 주장하였는데 방금 직전까지 본 위원은 한 번도 집행부의 명확한 비용편익에 대한 설득 주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⁵⁾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회의록(2024년 2월 26일(월))

[○] 부위원장 이소라 : 정말 이 손목닥터 9988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성은 나중에 한번 입중이 돼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⁶⁾ 자료 : 장수경 기자(2025. 5. 25.) 오세훈, '효과성 논란' 손목닥터 9988에 313억 추경, 한겨례 보도자료.

⁷⁾ 자료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2025. 5. 25.)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왔으며, 이번 추경은 참여자 증가를 반영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

^{- 「}오세훈, '효과성 논란' 손목닥터 9988에 313억 추경」 보도 관련 -, 설명자료.

이 더 많이 걷게 되었음은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되고"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그 객관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질병관리청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의 걷기 실천율 역시 모두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임.

또한 해당 기간동안 걷기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남(17.2%p), 부산(14.2%p), 대전(14.0%p), 울산(13.6%p), 경북(13.4%p), 서울(12.5%p) 순임.

<걷기 실천율 전국 결과>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1년 대비 2024년 증감율
서울	55.5	62.3	64.3	68	12.5
부산	46.1	52.9	53.2	60.3	14.2
대구	41.4	43.5	49.4	49	7.6
인천	45.6	54.4	57.2	55.9	10.3
광주	43.4	48.8	46.7	53	9.6
대전	39.8	53.2	47.4	53.8	14
울산	40.9	48.5	52.5	54.5	13.6
세종	38.5	50.7	47.1	49.6	11.1
경기	46.1	49.6	52	54.3	8.2
강원	32.4	35.6	40.6	39.6	7.2
충북	38.4	45.6	51.6	50.3	11.9
충남	37.5	44.9	46.5	54.7	17.2
전북	36.7	46.8	47.5	47.3	10.6
전남	35.9	44.5	44.9	45.7	9.8
경북	33.1	38.1	42.3	46.5	13.4
경남	42.9	44	43.3	48	5.1
제주	40.6	35.3	41	47.7	7.1

자료: 질병관리청(2024, 12.) 2024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걷기실천율 지표정의(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 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따라서, '손목닥터9988' 시행으로 서울 시민이 더 많이 걷게 된 것(12.5%p ▲)이라면, 다른 시·도(충남(17.2%p ▲), 부산(14.2%p ▲) 등)의 신체활동 관련 사업 예산규모와 동 사업에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규모('21년~'24년 총 예산액 740억 원) 등을 비교하여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임.
- 또한, 질병관리청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손목닥터 9988 시행(2021년) 후 서울 시민의 비만율은 더 증가하고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과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더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객관적 수치를 동 사업의 효과(본 사업의 목적: 시민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서울시' 지표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1년 대비 2024년 증감율
비만율	29.2	30.2	28.8	31	1.8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72	70.8	72.2	69.8	-2.2
주관적 건강인지율	52.9	54.5	53.7	51.6	-1.3

자료: 질병관리청(2024. 12.) 2024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 비만율 지표정의(자가보고 체질량지수(kg/m2)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 ※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지표정의(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 렸했던 사람의 분율)
- ※ 주관적 건강인지율 지표정의(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 한 사람의 분율)
- 현재 진행 중인 동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분석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의 효과성과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 겠음.

2.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별설명서 p.654〉

가. 현황

-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만 율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 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서 덴마크의 민간 제약회사인 '(주)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서울시'의 양해각서 (MOU)체결을 통해, 동 회사로부터 약 15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매년 5억원의 예산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임.
 - ※ ㈜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의 대표 제약회사로서,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오젬픽 프리필드펜'와 비만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위고비 프리필드펜'등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임.
- 이에 이번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의 예산이 총 5억원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i ,	400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x-)	(x-)
	500,000	0	500,000
사무관리비	(x-)	(x-)	(x-)
	105,000	0	105,000
공공운영비	(x-)	(x-)	(x-)
	55,000	0	5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x-)	(x-)
	90,000	0	9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x-)	(x-)
	250,000	0	250,000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	목구	보		산출내역 및 증건	} 사유	
5		-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역 190,000원*500개소	=	95,000천원
사	무	관	리	ы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200,000원*10명*5회	=	10,000천원
					증감사유		
					민간기업 기부금 지정기탁에 따른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55,000,000원	=	55,000천원			
0	9	운	엉	비	증감사유		
					민간기업 기부금 지정기탁에 따른 비만예방 및 '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
				- 62	○비만예방 사업 효과분석 50,000,000원	=	50,000천원
민	간 경	상시	업	보조	○만성질환관리 사업 효과분석 40,000,000원	=	40,000천원
					증감사유		
					민간기업 기부금 지정기탁에 따른 비만예방 및 '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
1000	We see a see		NO ACCORDED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 25,000,000원*10개구	=	250,000천원
자치	비단치	세경소	나 보	조금	증감사유		
					민간기업 기부금 지정기탁에 따른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

나, 분석의견

[실제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 이원화 문제 검토]

총 예산 5억원의 동 신규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크게
 ① '건강관리과'가 추진하는 '서울시 유아 비만 예방 사업(약2억원)'
 과 ② '보건의료정책과'가 추진하는 '보건지소 중심 만성질환관리'
 를 위한 2025년 어르신 장수 누리터 사업(약3억원)'으로 나누어
 지며, 각 세부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 ① 서울시 **유아비만 예방**사업(2억) 건강관리과 대한비만학회⁸⁾
- ▶ ②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3억) **보건의료정책과** 대한**당뇨**학회

	서울시 유아 비디	반 예방 사업		l 만성질환관리- 당수누리터 사업		
사업부서	건강관리과 (건	건강생활팀)	보건의료정책되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예산부서	건강관리	리 과	건강관리과 (타 부서 예산 사용)			
예산 총 액	약 2억	원	약 (3억원		
,lu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 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	약 9천5백만원 (190,000원 x 어린이집 500개소)	만성질환	약 1천만원		
사무 관리비	체조경연대회	약 2천만원	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200,000원 x 10명 X 5회)		
	사업비 (보육교사 교육, 측정도구 등)	약 7천5백만원				
공공 운영비	측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약 5천5백만원	O.	음		
민간경상 보조금	비만 예방 사업 효과분석 <mark>(대한비만학회)</mark>	약 5천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 효과분석 (대한당뇨병학회)	약 4천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없 <u>음</u>		만성질환관리 사업 운영 (장수 누리터 운영 10개 보건지소)	약 2억5천만원 (지소당 2천5백만원 x 10개 보건지소)		

⁸⁾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제3호에 근거하여,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교부 가능함. ㈜ 노보 노디스크의 기탁사유 - "서울시민의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부금 서울시 전달"

- 그런데, 25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P.654)에는 동 ①'비만사업' 및 ② '장수누리터사업' 의 '소관부서' 및 '사업담당'을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로만 명시하고 있고, 보건의료정책과는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더해, 동 기부금 (3년간 15억원)을 '예외적'으로 '사업세출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상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기부금심사위원회'역시 '건강관리과'가 모두 '기부 심사 제안설명서 작성'부터 '심의 상정'까지의 절차 관리를 주관하였음.
- 아울러, '25년 지정 기탁금 예산 약 5억원 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①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약 2억5천만원 (장수누리터 10개지소 지원) 및 ② 민간경상보조 약 9천만원(비만예방 효과분석(5천), 만성질환관리 효과분석(4천)) 역시 '위원회' 참여 및 질의응답을 모두 '건강관리과'가 수행하였음.

실	제 사업 수행 부서	건강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사업	서울시 유아 비만 에방 사업	25년 어르신 장수 누리터 사업
	사업설명서 상 (사업 담당 명시)	0	X (건강관리과만 명시됨)
	기부심사위원회 절차 관리	O	X (건강관리과 수행)
지방보조금	 산 설명서 작성 및 심의 상정 요청) 자치단체경상보조 [장수누리터 10개 보건지소 지원] (25. 3.18. 심의) 	0	X (건강관리과 수행)
관리위원회 참여 및 질의응답	민간경상보조 (1) 비만 효과분석 (2) 만성질환효과분석 (25. 5.13. 심의)	Ο	X (건강관리과 수행)

- 즉, '건강관리과'는 자신의 과 사업이 아닌 '보건의료정책과'의 '25년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까지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작성(p.654)'하였고 이에 더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절차를 수행하였음.
- 다시 말해, '건강관리과'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보건의료정책과'의 사업인 '어르신 장수누티러 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더해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에도 대응을 하였음.

'25년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의록 2025. 5. 13.(화) 14:00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장 ㅇㅇㅇ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의 세부추진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 등 전문가가 정기 건강상담 및 자기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당뇨병학회가 민간경상보조로 한 4천만 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 및 분석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이하 "중략")

○ ㅇㅇㅇ 위원

- 기존에 보건소,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보건소에서들 **만성** 질환관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오버래핑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는지.

○ 사업부서

- 만성질환이라 하면 아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보건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당뇨사업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 기반으로 어르신들이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성질환 예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뇨 플러스해서 만성질환을 추가적으로 의사가 직접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생략")

○ 그리고 동 추가경정 사업설명서(p.654)와 같이 '비만예방사업' 및 '어르신 장수누리터사업'이 모두 '건강관리과'사업으로 명시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지않고서는 '어르신 장수 누루터 사업'이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이며 단지, '예산'만을 '건강관리가'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알 수 없음.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지적 사항 검토]

- '25년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에 따르면, 동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中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1) 비만예방 효과분석(5천)(2) 만성질환관리 효과분석(4천) 사업이 '조건부 적정'결과를 받았음.
- 동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위원들의 주된 의견은 '민간경상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 ① 비만사업 및 ② 장수누리 터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사업의 내용과 대상, 프로그램 및 평가지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25년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의록 [2025. 5. 13.(화) 14:00]

- ㅇㅇㅇ 위원
 - 보통 **타 사업과 중복된 부분**들, **비만관리**라든가 **만성질환** 같은 경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조금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쨌든 대상별로 또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의사, 약사까지, 보육교사, 굉장히 다양하게 대상을 두셨더라고요. 그러신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평가지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실 예정인지. 이렇게 대상이 많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저 같은 경우는 조건부 적정으로 사전검토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5

'25년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의록 [2025. 5. 13.(화)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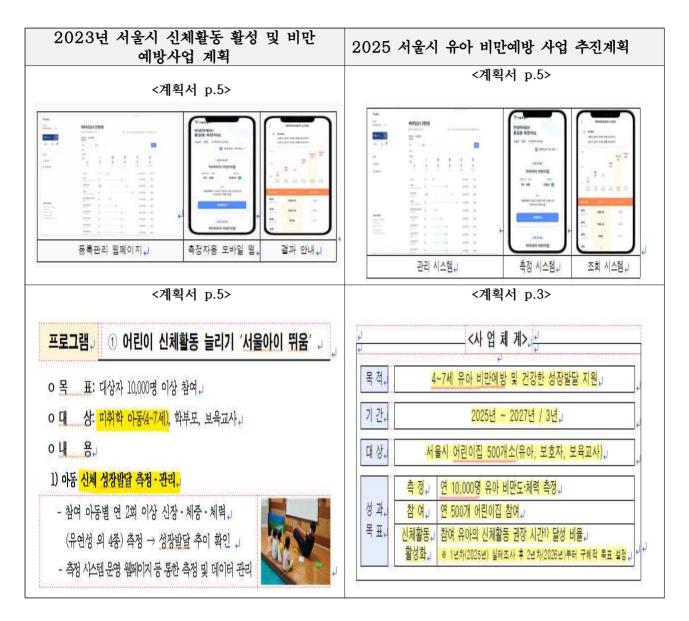
억 해서 3년간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민간 지정기탁에 의한 추경 편성인데 그거에 비해서 막 오락가락하는 거죠. 내용도, 대상도, 프로그램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했다가 대상이 또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도,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재검토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사전검토 했는데 저도 조건부 적정을 한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금액은 보조금은 9천이라 타 사업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사업내용을 조금 더 정교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조건부 적정으로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조건에 하나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 편성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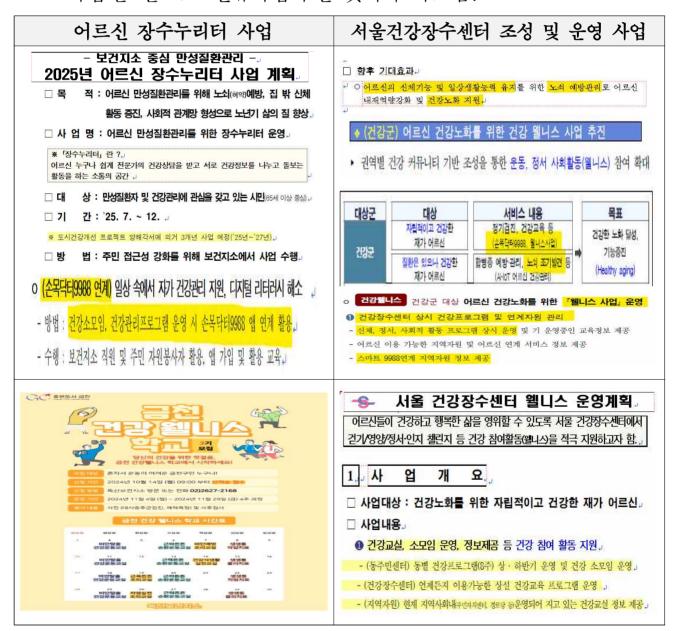
○ ① 서울시 유아 비만 예방사업(2억)의 경우, 과거 '23년 및 '24년에 재개하였으나, '25년 '중복 사업' 등의 이유로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 자체를 하지 않은 사업인 "비만예방사업"과 그 사업 계획서 상의 '내용'이 유사한 사항이 많아 사실상 같은 사업이라 사료됨.





- 따라서, '25년 본예산에 '서울시 예산부서' 차원에서 '예산 편성'
 을 하지 않은 동 '비만 예방 사업'을 다시 '민간 지정 기탁금'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새로운 사정 변경, 정책 환경 변경
 또는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② '25년 어르신 장수 누리터 사업(3억)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건강 장수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그 계획서 상의 '내용'이 유사한 사항이 많음.

- 즉, 모두 '보건지소'를 통해 '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에게 '노쇠 예방 관리', '신체활동 증진', '손목닥터 9988을 통한 건강 관리 사업 연계' 등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어르신 장수 누리터 사업'은 '서울시 건강 장수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일부분인 '건강군 어르신'에 대한 '웰니스 사업'을 별도로 '신규사업화'한 것이라 사료됨.



- 그러므로, 동 "25년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은 '25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p.654)상,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비만 및 만성질환 관리"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 '25년 본 예산 사업설명서(P.100) "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 및 운영"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수행'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모두 '보건의료정책과'가 수행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사료됨.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 및 운영
'25년 본예산	X	О
'25년 추가경정예산	О	X
예산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사업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3.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분석 〈사업별설명서 p.695〉

가. 현황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은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심리지원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이번 25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자치구 교부금액 축소에 따라 자 치단체자본보조에 1억 원을 감액하여 12억 원을 편성해 제출하 였음.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 예산(안) 총골	ł	-1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x-)	(x-)
	1,200,000	1,300,000	△1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x-)	(x−)
	1,200,000	1,300,000	△100,000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서울심리지원센터 설치 지원 1,200,000,000원(소요액)-1,300,000,000원(예산액) = △100,000	천원
	증감사유	
	자치구 교부금액 축소에 따른 감액(△100,000천원)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해서는 ① 사전조건인 조례 개정을 거친 후 ② 공모를 통해 자치구를 선정해야 하는 상 황인데,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는 시장 제출 조례안 통과 여 부 및 추경안 감액 규모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예산은 지난 「24년 제1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2024. 10. 10.)⁹⁾, 현행조례에는 자치구 설치비 지 원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적정'을 받았음.
- 이로 인해, 서울시는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가칭: 마음상담소)의 설치비 지원(1개 센터당 최대 2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을 시장 제출한 바 있음.
-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시장 제출 조례안(의안번호 2647)에 대한 사전심사(2025. 4. 28.) 과정에서 "향후 설치될 '자치구별 심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업무가 이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후, 해당 안건을 미처리(상정 보류)한 바 있음.

⁹⁾ 지난 24년 10월 10일 개최된 「'24년 제1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의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을 때는 조례상 서울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권역별로 설치,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 1개소당 2억의 자본금을 투자하면서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례상의 자치구 설치·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조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심의결과: 조건부)이 있어, 조례를 정비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서울시는 지난번 미처리된 시장 제출 안건(안번호 2647)
 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번 제331회 정례회에 다시 시장 제출(「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1」)하였는데,

해당 조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동 사업 예산도 자치구에 교부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번 추경안 심의 시, 시장 제출 조례안의 심의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번 시장 제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그 이후에 자치구 대상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데, 지난 25년 5월 8일 '자치구 마음 상담소 확충계획 및 공모안내' 관련,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회의결과, 자치구들은 "자치구별 신규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예산확보 그리고 인력문제, 특히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까지 설치 희망 의사를 밝힌자치구는 3곳(용산구, 강북구, 마포구)에 불과하여, 이번 추경안에 따른 감액 규모의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임.

〈자치구 마음상담소 현황('25.3월말 기준)〉

연번	구분	시작연도	시설명	운영주체
1	강동구	2007년	마음 두드림 상담소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	구로구	2020년	더 가까이 심리상담실	구로구 보건소
3	금천구	2018년	심리상담 마음'쉼'	금천구 보건소
4	동작구	2016년	마음건강센터	동작구 보건소
5	성북구	2022년	성북구심리지원센터	성북구 보건소
6	영등포구	2013년	힐링캠프 상담실	영등포구 보건소
7	은평구	2011년	한마음심리상담실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014년	다독임심리지원센터	은평구 응암보건지소
			*비고; '청소년마음건강센터	

			마음온'운영 중	
8	중구	2020년	마음건강 열린상담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9	중랑구	2018년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1호)	중랑구 보건소
		2024년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2호)	
10	종로구			
11	용산구	설치 희망		
12	성동구			
13	광진구			
14	동대문구			
15	강북구	설치 희망		
16	도봉구			
17	노원구			
18	서대문구			
19	마포구	설치 희망		
20	양천구			
21	강서구			
22	관악구			
23	서초구			
24	강남구			
25	송파구			